

전북대학교 치과대학 홍보출판위원회 규정

제정 2009. 03. 23

개정 2020. 03. 01

개정 2024. 10. 23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홍보출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대한 사항을 다룬다.

제2조(구성)

- ① 위원회는 학생부학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, 치과대학장이 임명하는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된다.
- ② 임명직위원은 적어도 기초치의학 전공교수 2인과 임상치의학 전공교수 2인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부학장이 되며,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임명직 교수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제3조(임기)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,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홍보 및 출판업무를 위하여 다음을 심의한다.

- ① 치과대학 대내외 홍보 및 출판에 대한 사항
- ② 치과대학 제반정보 및 기록관리에 대한 사항
- ③ 전임교원의 교육 및 연구·학술 업적 기록에 대한 사항
- ④ 학생의 교육 및 연구·학술활동 기록에 대한 사항
- ⑤ 치과대학 역사자료실 관리에 대한 사항
- ⑥ 기타 교수회의에서 위임한 사항

제5조(회의)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(2020. 3. 1)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(2024. 10. 23)로부터 시행한다.

제9편

실
설
위
원
회
규
정